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김생환 의원 대표발의)

의안 번호	2169
----------	------

발의연월일 : 2017. 10. 20.

발 의 자 : 김생환, 송재형, 박기열,
장인홍, 허기희, 문형주,
오경환, 김경자(양천), 김동욱,
이정훈, 강성언 의원(11명)

1. 제안이유

- 각급 학교에서 학생들을 대상으로 「대한민국헌법」이 보장하는 근로 기본권과 이를 기초로 제정된 각종 노동법규, 그리고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 및 노동에 수반되는 권리 등에 대해 체계적으로 교육함으로써 학생의 권리의식을 높이고 노동을 통한 인간의 존엄과 가치를 구현할 수 있도록 함.

2. 주요내용

- 가. 노동인권교육 활성화를 위한 교육감의 책무(안 제3조)
- 나.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에 관한 사항(안 제4조)
- 다.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에 관한 사항(안 제5조)
- 라. 노동인권교육 위탁에 관한 사항(안 제6조)
- 마. 교원 연수에 관한 사항(안 제7조)

3.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 「대한민국헌법」, 「근로기준법」

나. 예산조치 :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참조

다. 기 타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서울특별시 소재 각급 학교의 노동인권교육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여 학생이 노동의 가치와 중요성을 인식하고 노동인권과 관련한 문제해결 능력을 갖도록 함으로써 노동인권이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각급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2. “노동인권”이란 「대한민국헌법」 및 법률이 보장하거나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 등 대한민국이 가입·비준한 국제인권조약 및 국제관습법에서 인정하는 권리 중 노동과 관련된 모든 권리를 말한다.
3. “노동인권교육”이란 노동인권과 관련된 지식을 습득하고 노동인권을 존중하는 태도와 감수성을 배양하여 노동인권과 관련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하는 모든 교육을 말한다.
4. “산업수요 맞춤형 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0조제10호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5. “특성화고등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91조에 따른 학교를 말한다.
6.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 제76조의3제1호에 따른 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를 말한다.

제3조(교육감의 책무 등) 서울특별시교육감(이하 “교육감” 이라 한다)은 서울특별시 내 각급 학교의 모든 학생들에게 올바른 노동인권교육의 기회가 제공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 ① 교육감은 「서울특별시 학생인권 조례」 제29조에 따라 수립된 학생인권교육에 관한 종합계획에 기초하여 노동인권교육의 효율적 추진을 위한 노동인권교육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 이라 한다)을 매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시행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노동인권에 대한 학생의 인식 제고에 관한 사항
2. 노동인권교육 전문인력의 양성에 관한 사항
3. 노동인권교육 관련 교육자료 및 프로그램 등의 개발·보급에 관한 사항
4. 노동인권교육 지원을 위한 재원확보 방안에 관한 사항
5.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 및 지원을 위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5조(자문) 교육감은 제4조 시행계획의 수립 등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활성화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

1. 노동인권 보장 및 구제
2. 노동인권교육에 관한 시청각 자료가 포함된 교사용 지도안
3. 노동인권 관련 구제 방법이 포함된 학생용 워크북

4. 그 밖에 교육감이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효과적으로 구현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7조(위탁) ① 교육감은 학교 노동인권교육을 보다 전문적이고 효율적으로 시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이 제1항에 관한 사무를 위탁하는 경우에는 「서울시교육감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에 따른다.

제8조 (노동인권교육)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재학생을 대상으로 학기당 2시간 이상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

제9조(교원연수 등) ①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

②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고용노동부, 서울특별시청, 한국공인노무사회, 서울지방변호사회 등 외부기관과 연계한 교육을 실시할 수 있다.

③ 각급 학교의 장은 제1항에 따른 연수에 참여하는 교원들을 적극 배려하여야 한다. 특히 산업수요맞춤형고등학교, 특성화고등학교, 일반고등학교 중 직업교육을 실시하는 학교의 장은 소속 교직원들에 대한 노동인권교육을 실시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교육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제2조(다른 조례의 개정) 서울특별시조례 제6358호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2항제23호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3.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비용추계서 미첨부 사유서

1. 비용발생 요인

- ‘서울특별시교육청 노동인권교육 활성화 조례안’ 제5조(자문)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전문가의 자문을 구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6조(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 제공)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을 마련하여 학교에 제공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7조(위탁)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을 공공기관 및 법인·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 같은 조례안 제9조(교원연수 등) 교육감은 노동인권교육 역량 강화를 위하여 교원을 대상으로 연수를 실시할 수 있다고 함에 따라 비용 발생

2. 미첨부 근거 규정

「서울특별시 의안의 비용 추계에 관한 조례」 제3조제2항

3. 미첨부 사유

가. 예상되는 비용이 연평균 5억원 미만(제3조제1항제1호)

나. 추계결과 ≍ 378,100천원

- 예상되는 비용이 5년동안 378,100천원으로, 연평균 75,620천원임
- 추계의 전제
 - 추계기간 이후에도 비용발생
 - 물가상승률 미반영
 - 안 제6조 노동인권교육 표준교안은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서 노동인권교육 교안교재 개발에 대한 예산이 포함되어 있어 비용추계에서 제외(참고자료 첨부)
 - 안 제9조 교원연수는 서울특별시교육청이 기 추진하고 있는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에서 노동인권 교사 직무연수 예산을 편성·지원함에 따라 비용추계에서 제외(참고자료 첨부)

- 안 제5조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는 연간 1회 개최(상·하반기 각각 1회), 자문위원회의 위원 15명은 외부 전문가로 가정
- ※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설치·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시 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추계
- 안 제7조 노동인권 민간위탁교육은 1차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에서 직접 수행하고, 2차년도부터 노동인권교육 민간위탁을 전제로 추계
- ※ 노동인권교육 민간위탁 비용은 서울시교육청에서 제출한 ‘서울시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의 내용을 준용하여 추계

다. 상세 비용추계 결과

○ 총비용 ≙ 378,100천원

(단위 : 천원)

구분		연도	1차년도 (2018년)	2차년도 (2019년)	3차년도 (2020년)	4차년도 (2021년)	5차년도 (2022년)	합 계
		-	-	-	-	-	-	-
세입	-	-	-	-	-	-	-	-
	소계(a)	-	-	-	-	-	-	-
세출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운영비(안제5조)	5,700	5,700	5,700	5,700	5,700	28,500	
	노동인권교육 민간위탁 (안제7조)	-	87,400	87,400	87,400	87,400	349,600	
	소계(b)	5,700	93,100	93,100	93,100	93,100	378,100	
총비용(b-a)		5,700	93,100	93,100	93,100	93,100	378,100	

$$\text{○ 총비용} = \sum_{i=1}^5 (\text{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운영비})_i + \sum_{i=1}^5 (\text{노동인권교육민간위탁비용})_i$$

$$= 28,500\text{천원} + 349,600\text{천원}$$

$$\text{○} \sum_{i=1}^5 (\text{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운영비})_i = 28,500\text{천원}$$

- 연간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운영비 : 5,7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15명 × 년 2회 = 4,500천원
 - 위원회 운영비 : 10,000원 × 15명 × 년 2회 = 300천원

- ※ 노동인권교육자문위원회는 「서울특별시교육청 정책자문위원회 설치·운영 조례」에 따라 설치·운영하며, 자문위원회 운영비는 서울시교육청이 제출한 자료를 준용하여 추계
 - 업무추진경비 : 30,000원 × 15명 × 년 2회 = 900천원

※ 지방자치단체 업무추진비 집행기준 해설집 및 「부정청탁 및 금품 등 수수의 금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7조 별표 1(음식물 가액범위 : 3만원)

- 노동인권교육 자문위원회 세부내역 : 5,700천원

· 운영비			4,800	천원
- 참석수당	150,000원 × 15명 × 2회	=	4,500	천원
- 운영비	10,000원 × 15명 × 2회	=	300	천원
· 업무추진비			900	천원
- 업무추진비	30,000원 × 15명 × 2회	=	900	천원

자료 : 서울시교육청

$$\bigcirc \sum_{i=1}^5 (\text{노동인권교육민간위탁비용})_i = 349,600\text{천원}$$

- 노동인권교육 민간위탁운영비 = 87,400천원(연간비용) × 4년 = 349,600천원

※ 노동인권교육 민간위탁은 1차년도에는 서울시교육청 기 추진사업인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로 같음하고, 2차년도부터 민간위탁으로 이관하여 운영하는 것을 전제로 하였으며, 민간위탁 시 강사수당 및 회의수당 등은 서울특별시교육청 예산편성지침을 준용하여 추계

- 노동인권교육 민간위탁 세부내역 : 87,400천원

· 운영비			1,500	천원
- 공모심사수당	50,000원 × 5명 × 2회	=	500	천원
- 사무용품비	500,000원 × 1회	=	500	천원
- 행사용품비	500,000원 × 1회	=	500	천원
· 민간이전			85,500	천원
- 노동인권교육 시행 및 강사단 운영		=	85,500	천원
· 업무추진비			400	천원
- 협의회	20,000원 × 10명 × 4회		400	천원

주: 서울시교육청의 기 추진 사업인 학생생활지도사업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의 예산편성을 준용하여 서울시교육청에서 자료 제공

4. 작성자

시의회사무처 예산정책담당관

담 당 관 남승우

사업평가팀장 황훈

분석관 원동아

☎ 02-3705-1285

e-mail : dongyal@seoul.go.kr

【첨부자료】 서울특별시교육청 기 추진사업

○ 사업명 : 학생생활지도지원 사업

□ 사업개요

사업기간	<input checked="" type="checkbox"/> 연례반복
사업위치	서울특별시교육청
총사업비	총 144,790천원 [국비] 0 [교특]144,790천원 (보조율) 0 % [구비]
사업내용	○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교사 직무연수, 교안 및 교재개발, 상담 및 권리구제 사업 등을 통하여 학생 노동인권 보호 및 증진,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에 기여
사업형태	<input checked="" type="checkbox"/> 직접수행 <input type="checkbox"/> 자치단체 보조 <input type="checkbox"/> 민간이전 <input type="checkbox"/> 출연출자 <input type="checkbox"/> 직민간위탁 <input checked="" type="checkbox"/> 기타
사업시행주체	민주시민교육과

□ 세부 산출내역

○ 노동인권 상담 및 컨설팅 직무연수

- 대상 : 중·고등학생
- 내용
 - 근로학생을 대상으로 한 노동인권 상담 및 권리구제 시스템 구축
 - 서울진로직업박람회에서 학생 노동인권 상담 및 노동인권교육 프로그램 진행
- 소요예산 : 6,100천원

· 운영비		3,300	천원
- 심사수당	50,000원 × 10명 × 5회	=	2,500 천원
- 행사용품비	4,000원 × 200명	=	800 천원
· 업무추진비		2,800	천원
- 기타업무추진비	3,000원 × 800명	=	2,400 천원
- 업무협의회경비	20,000원 × 10명 × 2회	=	400 천원

○ 노동인권 교사 직무연수

- 대상 : 초·중등 교원 및 전문직
- 내용
 - 교사대상 노동인권 교육을 통하여 학생 노동인권 보호와 노동인권 친화적인 학교문화 조성
 - 초등입문(30명), 중등입문(30명), 통합심화(30명)과정으로 나누어서 운영

- 소요예산 : 12,890천원

• 운영비			11,550	천원
- 강사수당	180,000원 × 10명 × 3회	=	5,400	천원
- 교육과정심의수당	20,000원 × 10명 × 3회	=	600	천원
- 연수자료집 인쇄	10,000원 × 50부 × 3회	=	1,500	천원
- 원고료	10,000원 × 5면 × 3시간 × 5명 × 3회	=	2,250	천원
- 일반수용비	3,000원 × 40명 × 5일 × 3회	=	1,800	천원
• 업무추진비			1,340	천원
- 교육과정심의협의회비	20,000원 × 5명 × 2회	=	200	천원
- 기타업무추진비	20,000원 × 1일 × 4명 × 3회	=	240	천원
- 연수평가협의회비	20,000원 × 15명 × 3회	=	900	천원

○ 노동인권교육 교안교재 개발

- 대상 : 초·중·고등학생

- 내용

- 노동인권강사단과 교원이 활용할 수 있는 노동인권교육 교안 개발
- 만화로 보는 노동인권 콘텐츠 개발 및 보급
- 광주시교육청이 개발한 인정교과서의 판권을 협조받아 서울시교육청 관할 학교에 인쇄 보급

- 소요예산 : 46,500천원

• 운영비			45,900	천원
- 교안개발심의수당	50,000원 × 5명 × 4회	=	1,000	천원
- 교안개발제작및인쇄비	400,000원 × 2차시 × 3종	=	2,400	천원
- 매뉴얼및교재제작보급	15,000원 × 750교 × 2부 × 1회	=	22,500	천원
- 매뉴얼및교재제작용역비	20,000,000원 × 11청	=	20,000	천원
• 업무추진비			600	천원
- 교안개발협의회	20,000원 × 10명 × 2회	=	400	천원
- 매뉴얼및교재제작업무협의회	20,000원 × 5명 × 2회	=	200	천원

○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대상 : 중·고등학생 및 고등학교 교사

- 내용

- 학생 및 교직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육
- 고등학교 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노동인권교실’ 시행(300학급)
- 전환기 중학생 대상 ‘중학교 맞춤형 노동인권교육’ 시행(50학급)

- 고등학교 교사대상 ‘학교로 찾아가는 교사대상 노동인권교육’ 시행(50교 개교)
 - 서울형 안심알바신고센터 개소와 연계한 거점학교 노동인권교육 지원(100학급)
 - 산학일체형 도제학교 학생 대상 노동인권교육 (50학급)
- 소요예산 : 79,300천원

• 운영비			77,700	천원
- 강사수당	130,000원 × 580학급(교)	=	75,400	천원
- 일반수용비	200,000원 × 4회	=	800	천원
- 행사용품비	3,000원 × 10개 × 50개교	=	1,500	천원
• 업무추진비			1,600	천원
- 사업추진경비	20,000원 × 20명 × 4회	=	1,600	천원

주1. ‘일반수용비’ 와 ‘사업추진경비’ 는 학교로 찾아가는 인권교실(학생인권) 운영과 예산 공동사용